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최종 의결



▲ 10월 22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무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11차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 이후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있다.(왼쪽부터) 김윤태 경사노위 운영국장, 구정모 부산시 인사과장, 최선에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 이재용 국립강릉원주대 교양기초 교육본부 교수,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조경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공무원 근면위 위원장), 김태신 한국노동연구원 본부장, 신동근 공무원연맹 수석부위원장, 고영관 공무원연맹 정책본부장, 이상엽 공무원연맹 홍보교육본부장, 이경한 인사혁신처 공무원노사협력관, 권창준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조영진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 최수진 교육부 교육자치협력과장.

경사노위 산하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근면위)는 10월 22일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최종 의결했다.

이번 의결은 6월26일 경사노위 위원장의 심의 요청일로부터 4개월여 간의 집중 논의 끝에 이뤄진 것으로 그간 근면위는 전원회의의 11차례, 간사회의의 9차례, 공익회의의 5차례 등 수십 차례의 치열한 논의를 통해 합의로 의결*을 이뤄냈다.

*재적위원 15명 중 14명 출석, 출석위원 14명 중 13명 찬성(1명 기권)

근면위 의결에 따라 경사노위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의결 내용을 고용부에 통보했다.

구체적인 의결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근면위는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최소 단위별* 조합원 규모에 따라,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행정부·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청

총 8개 구간으로 구분해 연간 면제 시간의 한도를 부여하면서, 가장 많은 교섭단위가 존재하는 구간(300명~1,299명)에 연간 근무시간 면제자가 1~2명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정했다.

또한 인사혁신처장이 행정부 교섭 등에 필요한 경우 연간 6,000시간 이내에서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행정부 단위로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에 추가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연간 사용 가능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 가능한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정했다(다만, 조합원 수 299명 이하의 사용가능인원은 2명).

한편, 부대의견으로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고시 2년 후 경사노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향후 재심의를 준비하도록 했다.



▲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이 최종 의결 이후 인사말을 하고있다.

<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

가. 조합원 규모별 근무시간 면제 한도

조합원 규모*	연간 시간 한도	연간 사용가능인원
299명 이하	최대 1,000시간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 다만, 299명 이하의 사용 가능 인원은 '최대 2명'으로 정한다.
300명~699명	최대 2,000시간 이내	
700명~1,299명	최대 4,000시간 이내	
1,300명~1,999명	최대 6,000시간 이내	
2,000명~3,999명	최대 8,000시간 이내	
4,000명~4,999명	최대 10,000시간 이내	
5,000명~14,999명	최대 12,000시간 이내	
15,000명 이상	최대 28,000시간 이내	

* '조합원 규모'는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최소단위의 재직 중인 조합원 수를 의미함

나. 인사혁신처장은 행정부 교섭 등에 필요한 경우 연간 6,000시간 이내에서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행정부 단위로 설립된 노동조합에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경과 >





▲ (왼쪽부터) 권창준 고용부 노동개혁정책관, 조경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공무원 근면위 위원장), 신동근 공무원연맹 수석부위원장이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나누고 있다.

이번 의결사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법제심사·행정예고 등을 거쳐 고시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번 의결은 '23.11월 사회적 대화 복원 이후 '첫 노정간 합의결과'인 동시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노조활동과 합리적 공직문화의 확산 등 공무원 노사관계 발전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만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경사노위는 제도의 첫 도입인 만큼, 공무원 근면위 부대의 결에 따라 면제년도 재심의에 대비하여 고시 2년 후 있을 관련 실태조사도 차질없이 준비할 예정이다.

담당 기획과 류형민 사무관

공무원 근면위 위원장 등 심의위원들, 의결 결과 브리핑 가져

제11차 전체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이 진행된 이후 조경호 근면위 위원장과 심의위원들은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나눴다.

Q. 공무원 타임오프 제도 도입으로 인한 예상 예산액이 얼마인지?

조경호 위원장은 “최대치로 계산 할 경우 200억 원 중반 수준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며, “예산은 수요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Q. 미참여 공무원 노조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는지?

조경호 위원장은 “전원회의를 11회, 확대간사회의를 포함한 간사회의를 9회, 노무법인과 공동으로 심의위 공익위원이 참여한 공무원 노사관계 현장 실태조사도 했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충분한 토의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 신동근 공무원연맹 수석부위원장은 “다각도로 공무원 노동계 의견을 피력했지만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하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첫 도입되는 공무원 타임오프가 무한정 지연되면 안된다는 고민에 의결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권창준 고용부 노동개혁정책관은 “공무원 타임오프 제도 도입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국민의 시각에서 실질적으로 노사 모두 공공서비스의 질도 향상하고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Q. 관행적으로 운영해온 묵인 전임자 역할이 억제되는 것이 아닌지, 공무원 노조 활동을 위축 시킬 우려는 없을까?

조 위원장은 “지나치게 많으면 국민 입장에서 거부감이 있을 수 있고 너무 적으면 공무원 노사관계를 망가뜨릴 수 있다”며, “적정선에서 의결을 봤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타임오프가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작동할 것이므로 투명한 노조활동에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sic**

미래세대 특위, 전문위 출범시켜 집중 논의 전개



▲ 지난 10월 4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개최되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10월 16일 대회의실에서 제 10차 전체회의를 열어 전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의결했다.

특위는 4대 논의 의제 중 ▲산업전환 의제는 별도 회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하기로 하고, ▲불공정 격차해소, ▲유연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과 타협의 노사관계 의제는 특위 내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 심화 및 세부 의제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그 외 ‘플랫폼 노동’ 과 ‘인공지능과 노동’을 주제로 별도 회의체와 연구회를 각각 구성하기로 했다. 해당 안건은 지난 10월 4일 개최된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서도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전문위원회는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노·사·정 및 공익위원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10월 23일에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전문위원회는 우선 의제 구체화 작업을 시작해 특위 운영기간이 연장되면 1월 말까지 매주 회의를 진행하고 필요시 워크숍도 개최하는 등 집중 논의를 통해 논의결과를 특위 전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노

사정 모두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보다 심도 깊고 속도감 있는 논의를 하기로 했다”면서 “전문위원회가 노사정 합의의 단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slc**

담당 전문위원실 손영우 전문위원

< 전문위원회 위원 명단 >

구분	성명	직책
위원장	김덕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노동계 위원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처장
	유정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장
경영계 위원	남용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정부 위원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
	김유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공익 위원	이호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